

Vol. **48**

2020년 4월
해사정책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 괄 박한선 실장
- 감 수 윤희성 본부장
- 발행인 장영태 원장
- 발행처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 E L . 051-797-4800
- F A X .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MO,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운업계의 혁신적 변화와 협력 요구

■ 코로나19¹⁾는 세계 무역공급사슬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충격은 장기간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a)b)c)d)}

▶ 코로나19 여파, 2020년 초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기에 찬물

- 2019년 말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대감으로 2020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으나, 2020년 1월 말 발생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표 1>에서 보듯이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²⁾에 비해, 현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무역위상이 높아지고 질병의 확대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1> 2002년과 2019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 비교

구분	중국비중	2002년	2019년
구매력 평가기준	세계 GDP 대비 (US \$ 기준)	8.3% (4.3%)	19.3% (17%)
유효수요 기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중국 수입비중	4.5%	13.5%
	원자재 소비	10~20%	50~60%
	원유	6.6%	13.5%
	철강재	21.0%	64.3%
	구리	17.8%	53.3%
	알루미늄	16.5%	57.3%
	소비자 판매	반도체	34.6%
		스마트폰	29.2%
		PC	20.0%
		승용차	34.5%
부채 기준	부채비중	120%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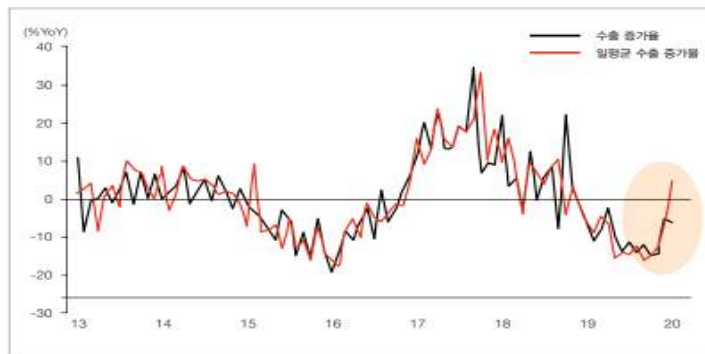
* RealInvestmentAdvise.com의 자료 수정

- 아울러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수요부진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경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지속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1) 코로나19 (COVID-19)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임
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이 시작된 이래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전염병임

- 한편 한국의 수출의존도(전체 수출액/GDP)는 2017년 기준 37.5%로 글로벌 상황에 상당히 민감함
- 올해 1월 수출이 증가하는 등 반등을 보이던 국내 경기는 일반적으로 계약 이후 통관까지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이후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e)}

〈그림 1〉 2020년 1월 일평균 수출, 14개월 만에 YoY +4.8% 증가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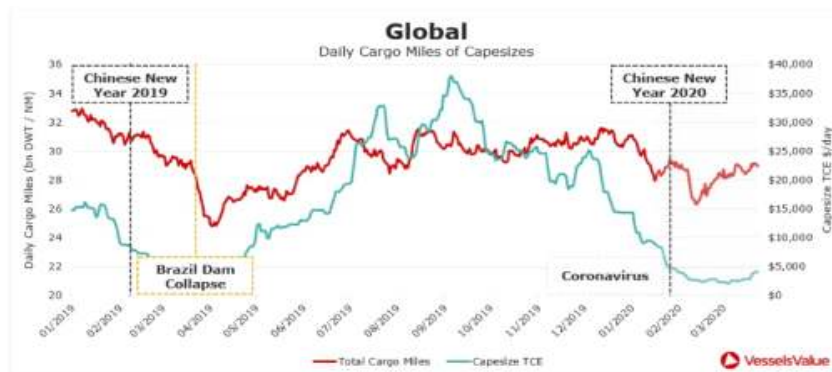


* 삼일회계법인 자료 인용

▶ 안개속의 해운산업 전망,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으로 진행할 가능성 높아

-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해운 물동량은 크게 감소하였고, 지난 1월에는 중국 상하이항 (양산항)은 작년대비 총 물동량이 17% 감소하였고, 미국 LA항의 2월 물동량은 25% 감소하였음
- 그러나 VesselsValue에 따르면 지난 3월말부터 케이프사이즈 톤·마일 수요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운산업 회복의 조짐으로 해석함

〈그림 2〉 total cargo miles and capesize cargo miles demand



* RealInvestmentAdvise.com의 자료 수정

- 아울러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 생산지수가 코로나 19 확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으며(2월 생산지수 35에서 4월 1주 생산지수 52로 증가), BCI(Baltic Capesize Index)도 2개월 만에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하여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기적 경제 예측은 혼란스러우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하는 것이 지배적임

IMO, 코로나19 관련 선박검사와 선원자격증명에 관한 규제완화 적극 권고^{f)}

- ▶ IMO Circular Letter No. 4204/Add.5 및 Add.7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해운활동과 관련하여 협약 적용의 완화를 권고하였음.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국가들의 조치는 <표 2>와 같음

<표 2> 코로나19관련 IMO 회원국 주요조치 사항

국가	주요조치사항
그리스	- STCW 78에 근거한 선원 증서 유효기간 연장 (2020.4.1.) - ISM 내부감사 3개월 연기(2020.4.1.) - 이탈리아, 터키, 알바니아 승객이동 금지 (2020.4.15.까지) - 그리스 입항 금지(관광사업용 선박: 4.15 까지, 개인 레크레이션 선박: 4.19 까지)
독일	선박검사 증서, 선원증서, 선박검사, MARPOL, BWMC, 황산화물 검사 기준 완화 적용 (2020.3.20.)
일본	선원 자격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및 의료증서 유효기간 연장(2020.4.15)
네덜란드	- 선원 자격증명서 유효기간 연장(6월 19일까지) - 유효기간 도래한 선내 의료장비 사용연장 인정(6월 19일 기준) - 주요항만(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 건강검진 지침 강조
프랑스	항해자격을 포함한 STCW 관련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2020.3.20.)
러시아	선원증서, 선원보건증명서 및 선박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2020.3.20.)
이탈리아	- 수중 선저검사 결과 만족할 경우 dry-dock 선저검사 유예 (2020.4.2.) - 선원자격증명서, 교육이수증서 및 승무자격증서 유효기간 연장 (2020.3.27.)
방글라데시	- 선원자격증서, 교육이수증서, 선박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2020.3.27.) - 선원보건증명서가 해상에서 만료되는 경우 다음 기항지까지 자동 연장 (2020.3.27.) - 코로나 19로 인한 선원충원불가 상황은 최소안전정원의 면제사항으로 인정 (2020.3.27.)
쿠바	선원자격증명서, 교육이수증서 및 승무자격증서 유효기간 연장 (2020.4.2.)
뉴질랜드	선원자격증명서, 선원보건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2020.4.2.)
스페인	- 선원자격증명서, 선원보건증명서, 훈련자격증 유효기간 연장 (2020.4.3.) - 스페인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긴급 점검을 제외한 점검 보류 (2020.4.3.) -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입항금지 (2020.4.9. 23:59까지)
UAE	해운산업 종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Horn of Hope" 계획을 발표하고 매일 현지시간 18시30분에 모든 함정은 15초 동안 기적을 울림
몬테네그로	선원자격증명서, 교육이수증서 및 선원보건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2020.4.1.)
사우디 아라비아	선원자격증명서, 사우디 선원수첩, 의료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2020.4.1.)
태국	- 선박관련 증명서, 선원증명 및 선원수첩 등의 유효기간 연장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선주는 선박검사 및 감사관련 등 서류를 IMO로 송부
바하마제도	최근 20일 동안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자 입국을 금지하며 4월 19일부터 영국, 아일랜드 및 유럽으로 확장 적용 (2020.3.20.)

- IMO는 현재 코로나 19 상황을 “예측불가능한 상황 (unforeseen situation)으로 해석하였으며 선박인도 일 지연을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통보³⁾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러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비접촉 원격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선박검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르웨이-독일 선급 DNV GL은 세계 최초로 2018년부터 발전시킨 원격 점검/확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선박에 문서와 동영상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부 주기적 검사항목 등은 원격으로 확인하고 있음
 - 미국 선급 ABS도 자체 원격 선박검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입거검사 연장(Drydocking extension) 및 무선설비 갱신검사(radio renewals)를 포함하여 선박검사를 위한 추가 원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미국 시카고 해안경비대(OCMI: Coast Guard Officer in Charge, Marine Inspection)는 선박 점검 시 직접 선박에 탑승하여 조사하는 대신 검사서류, 사진, 비디오, 선박비치자료 등을 검사 대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DNV GL에서는 지난 4월 2일 원격 선박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화상세미나(webinar) 실시하였으며 전자 증명서 활용, 스마트 검사 예약, 전문가들의 직접 연결 서비스(DATE: Direct Access to Technical Experts)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음
- ▶ **한국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박선원 비상지침을 배포함**
 - 대한민국국적 선박의 선박증서 유효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함(선박검사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등 5종)
 - 대한민국 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현실적인(pragmatic) 항만국통제 점검 방침을 결정함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검사관 또는 인증심사관의 현장입회하에 검사 또는 심사가 불가할 경우 원격방식의 검사 등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예정임 (선박검사, ISM 및 ISPS 인증심사를 사진, 온라인, 전화, 팩스 등의 원격방식 검사로 수행)

■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극복은 장기적이고 글로벌한 접근방법 필요하며 국제기구 역할 확대 필요**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국가적 고립주의(nationalist isolation)가 아닌 글로벌한 연대(global solidarity)의 중요성 강조**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고립주의가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는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글로벌한 연대만이 두 가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몇몇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무조건적 국경폐쇄, 인적교류 금지, 타국선박 입항금지 등은 코로나 19

3) IMO Circular Letter No. 4204/Add.7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는 근본적 방법이 될 수 없음

- 코로나19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는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도 다르지 않음. 따라서 IMO와 같은 국제기구 중심의 글로벌한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 그동안 한국은 IMO 이사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A그룹에 10회 연임되어 20여 년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국제적 연대를 주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황선일 전문연구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shwang@kmi.re.kr / 051-797-4675)

참고 자료

- a) https://www.pwc.com/kr/ko/publications/research-insights/samilpwc_src_covid19_1.pdf (검색일: 2020.04.09)
- b) <https://www.ship-technology.com/features/impact-of-covid-19-on-shipping/> (검색일: 2020.04.09)
- c) <https://www.ship-technology.com/features/impact-of-coronavirus-on-shipping/> (검색일: 2020.04.09)
- d) <https://www.ship-technology.com/features/impact-of-coronavirus-on-shipping/> (검색일: 2020.04.09)
- e) 삼일회계법인 “코로나19가 미칠 잠재적 영향과 대응” 자료 참고
- f) IMO Circular Letter No. 4204/Add.5 and Add.7